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68
----------	-------

발의연월일 : 2025. 12. 24.

발 의 자 : 박성훈·서지영·백종현
김기현·고동진·박충권
이현승·이상휘·김기웅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휴업·폐업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회원·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수의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시설업자가 갑자기 폐업 등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용자를 보호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휴업·폐업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함으로써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선불식 체육시설업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신설).
- 나. 체육시설업자가 통보 없이 폐업하거나 잠적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자 현황 조사 및 긴급 안내 등 소비자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 신설).
- 다.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는 이용료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라. 선불식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 미리 이용료의 중도환불, 판매된 회원권의 잔여 기간 및 금액에 대한 정산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마. 정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보완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를 “촉진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책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로 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선불식 체육시설업”이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한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긴급 소비자보호 조치)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통보 없이 폐업하거나 잠적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현황 조사 및 긴급 안내
2. 시설 잠금장치 해제 요청 및 현장 보존
3. 회원권·계약서 등 증거자료 확보 지원
4.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경찰관서와의 공동 대응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

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선불식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이하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라 한다)는 이용료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예치하여야 한다.

③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는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 사실을 이용자에게 서면 및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29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3항 및 제5항에”로, “조치”를 “조치, 보완명령의 방법”으로 한다.

④ 선불식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용료의 중도 환불, 판매된 회원권의 잔여 기간 및 금액에 대한 정산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에게 보완

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제8호 중 “보험에”를 “보험 또는 보증보험등에”로 한다.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1항)제4호 중 “보험에”를 “보험 또는 보증보험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로 한다.

①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영업 중인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내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증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을 <u>장려하고, 체육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善用)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촉진하고 체육시설업자의 책임성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u>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u>선불식 체육시설업</u> ”이란 1개월 이상 이용료를 선납하게 하거나 회원권을 판매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을 말한다.
<u><신설></u>	제24조의3(긴급 소비자보호 조치)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29조제1항에 따른 통보 없이 폐업하거나 잠적하여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현황 조사 및 긴급 <u>안내</u>

제26조(보험 가입) (생략)

<신설>

2. 시설 잠금장치 해제 요청 및
현장 보존

3. 회원권·계약서 등 증거자료
확보 지원

4.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
원, 경찰관서와의 공동 대응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
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
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
다.

제26조(보험 가입) ①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선불식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이하 “선불식 체육시설업자”
라 한다)는 이용료 등과 관련
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
를 배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
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
증금(이하 “보증보험등”이라 한
다)에 가입하거나 예치하여야

<신 설>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 ~ ③ (생략)

<신 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 방법, 통지에 갈음하는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한다.

③ 선불식 체육시설업자는 계약 체결 시 보증보험등에 가입 또는 예치 사실을 이용자에게 서면 및 전자적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29조(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불식 체육시설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용료의 중도 환불, 판매된 회원권의 잔여기간 및 금액에 대한 정산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정산계획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불식 체육시설업자에게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5항에-----
-----조치, 보완명령의 방법

-----.

제30조(시정명령)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 7. (생략)

8.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때

제40조(과태료) <신설>

<신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0조(시정명령) -----

-----.

1. ~ 7. (현행과 같음)

8. -----보험 또는 보증보험등에-----

제40조(과태료) ①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보완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산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③ -----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3. (생략) 4. 제26조에 따른 <u>보험에</u> 가입하지 아니한 자 5. ~ 7. (생략) ② <u>제1항에</u>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 1. ~ 3. (현행과 같음) 4. -----<u>보험 또는 보증보험등에</u>----- 5. ~ 7. (현행과 같음) ④ <u>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u>---- ----- ----- -----.
--	---